

## 버스노선 신설(변경) 요망에 따른 청원

의안 번호	49
----------	----

소개년월일 : '98. 9. 21.

소개의원 : 박규호 의원

### ■ 주 문

감천동 경유 송도 아랫길 방향 버스노선 및 감천동 경유 엄궁농산물시장,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방향 구간 버스노선 신설(변경) 요망건과 3번버스의 영선동 구간까지 버스노선 연장 요망 사항임.

### ■ 주요골자

- 현재 감천동을 경유하여 수산물 공판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16번버스를 이용하여 송도윗길에서 하차하여 무거운 짐을 들고 도보로 가거나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
- 또한 감천동을 경유 엄궁농산물시장 및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버스를 갈아타거나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고
- 당초 3번버스가 운동장을 경유 영선동까지 운행하다가 운동장까지만 운행되고 있어 영도에 직장 및 학교를 통근, 통학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
- 따라서 상기 지역주민들의 요망사항인 버스노선 신설(변경) 요망건을 의회차원에서 주민요구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망하는 사항임.

### ■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65, 66, 67, 68조
- 사하구의회 청원심사 규칙

## 청원요지서

1. 청원건명 : 버스노선 신설(변경) 요망

2. 청원인(대표) : 감천동 456-4, 박기주

3. 소개의원 : 박 규 호 의원

4. 청원서 접수일 : 1998. 9. 21

### 5. 청원요지 및 경과

○ 감천동 경유 송도 아랫길 운행 버스노선 신설(변경)요망

▷ 현재 감천동을 경유하여 송도 아랫길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수협공판장을 이용하려면 16번 버스를 타고 송도 윗길에서 하차를 하여 무거운 짐을 들고 택시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오고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

○ 감천동 경유 - 염궁 농산물시장 -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운행 버스노선 신설(변경) 요망

▷ 상기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염궁농산물시장과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려면 택시를 이용하거나 버스를 두 번이상 갈아타는 등 불편사항이 있음

○ 장림동 - 운동장 - 영선동 구간 버스노선 연장요망

▷ 당초 3번버스가 운동장을 경유하여 영선동까지 운행을 하였으나 얼마전부터 운동장까지만 운행하여 영도에 있는 직장 및 학교까지 통근(통학)을 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음

## 6. 소개의원 의견

버스노선 신설(변경) 요망 청원사항은 상가지역 주민들의 요망사항이며 서민가게 부담경감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됨.

## 청원소개의견서

청원건명	감천동 버스노선신설(변경) 요청	
청원인	주 소	사하구 감천동 456-4번지
	성 명	박 기 주
소개의원	박규호 의원(인)	
소개년월일	1998. 9. 21.	
<p><u>소개의견</u></p> <p>○ 감천동 경유 송도아랫길 운행버스노선 신설(변경) 요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현재 운동장을 출발하여 송도아랫길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은 16번 버스노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수산물 공판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송도윗길에서 승·하차하여 무거운 짐을 들고 수협공판장을 도보로 걸어갔다와야하거나 택시를 이용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.</li> </ul> <p>○ 감천경유 - 업궁농수산물시장 - 서부시의버스터미널운행 버스노선 신설(변경) 요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감천지역 주민들이 업궁농산물시장 및 서부시의버스터미널을 이용하려면 직접 가는 버스가 없어 버스를 두 번이상 갈아타거나 택시를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는 실정임</li> </ul> <p>○ 장림동 - 운동장 - 영선동 구간 버스노선 연장 요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당초 3번버스가 운동장을 경유 영선동까지 운행하다가 현재 운동장까지만 운행되고 있어 영도에 직장 및 학교를 통근, 통학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</li> </ul> <p>○ 상기주민 청원사항은 상가지역주민의 오랜숙원사업이며 서민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불편 사항해소 차원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됨.</p>		